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2786
- 발 의 자 : 박순규 의원 (찬성의원 32명)
- 발 의 일 : 2021년 10월 15일
- 회 부 일 : 2021년 10월 20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조문에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없고 수동적인 기부자 예우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문화 활성화 부분을 추가하고자 함.
- 서울시에 기부된 기부금액은 사회 전반적인 기부문화의 확산 영향으로 2019년 60억원, 2020년 103억원, 2021년 348억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3. 주요내용

- 시장은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조2).
-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홍보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함(안 제5조의2).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개정 함(안 제4조제1항, 제5조제2호, 제6조제1항, 제7조, 제1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1. 10. 25. ~ 11. 1.)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의 노력 의무와 홍보 및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1조의2, 안 제5조의 2)하고, 상위 법령(「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에 맞게 조문을 정비(안 제4조제1항, 제5조제2호, 제6조제1항, 제7조, 제12조)하려는 것임.
- 서울시는 현행 조례와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제1호1)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부금품(기부금 또는 현물)을 기탁한 자에 대하여 기부증서 발급, 기부자 명단 작성, 복지 후생시설의 이용 편의 제공, 명예의 전당 설치 등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예우를 하고 있음.
- 안 제1조의2는 시장에게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1조의2(시장의 책무)</u>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약칭: 기부금품법)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2019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동 조례 제5조에 따라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접수 및 승인된 기부금품은 총 518억원으로, 접수 건수와 기부금액 모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기부금품 접수 승인 현황〉

○ 2019년~현재까지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받은 기부금품

<총괄 내역>

구 분	계	2021.8.	2020	2019
접수 승인(건 수)	390	76	160	154
승인 총액(백만원)	51,792	34,792	10,345	6,035

<기부자 별 내역>

구 분	계	2021.8.	2020	2019	비고
계	389	76	160	153	
개인	112	19	49	44	
단체	122	19	57	46	재단, 사단, 임의 단체, 공공기관, 해외 기관 등
기업	113	31	45	37	민간기업, 공기업, 외국 기업, 개인사업자 등
대기업	42	7	9	26	대기업 그룹 소속 계열사

※ 출처 : 시민협력국 제출

-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에게 자발적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서울시 전반에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도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2011년 중앙 정부도 과거 규제 위주의 기부금 정책에서 기부문화 활성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²⁾을 제출하였으나, 국회에서 논의 중 임기 말 폐기되는 등,
 - 아직까지는 현행 「기부금품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자발적 기탁금품을 접수하는 것도 준조세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시장에 대한 책무규정이 자칫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조장하는 근거가 될 여지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의2는 시장에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기부 관련 지역 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협력체계 구축,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5조의2(기부문화 활성화)</u>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2. 기부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2011년 11월 18일 당시 행정안전부는 제명변경 :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개정하고, 제1조 목적을 기부를 장려하고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사회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책무 신설하고, 모범 기부자 포상, 공공시설 이용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금품 법』 개정안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바 있음.

-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기부 참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와 함께 기부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을 맞이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서울시민에게 기부와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는 취지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기부금품법」 제5조와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을 적극적으로 모집 및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기업 등 단체와 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서울시가 개정조례안 제5조의2에 따라 추진하는 홍보 및 사업이 사실상 강제적인 모집행위로 비춰지지 않도록 사업 계획 수립과 운영에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하는 각종 행사초청

3. ~ 6. (생략)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 ①

법제5조제2항에 따라 시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와 제5조제6
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
회를 둔다.

② 기부자 명예의 전당, 상징물 설치의 장
소 및 규모, 종류, 기간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기부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③ (생략)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
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위원은 공무원 4명 이내, 시의원 2명
이내, 그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⑤ (생략)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 6. (현행과 같음)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 ①

법 제5조제2항-----

----- 기부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위원회는 기부자 -----
----- 사항을
심의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 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그 밖-----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시행규칙) ----- 시행-----
-----.

○ 한편, 최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10.19.)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는바, 서울시도 선도적으로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민정
------	-----	-------	-----